

의안번호	제 30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9월 일 (제294회)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광수 의원
발의연월일	2010년 9월 일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
----------	----

발의년월일 : 2010년 9월 일
발의자 : 김광수 의원
찬성자 : 심기보, 박한규, 김도경,
노광기, 손문규, 장선배,
임현, 최미애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는 물론 출산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 시책을 위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5조, 제6조)
- 나.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대상(안 제7조)
- 다.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자치단체별 지원금 분담, 충청도가 40%, 시군이 60% 부담(안 제8조)
- 라.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부여(안 제11조)
- 마.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 고취와 출산장려에 따른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의 날 운영(안 제12조)
- 바. 출산장려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안 제13조)
- 사. 저출산 대책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운영(안 제15조내지 제18조)

3. 의안전문(비용추계서 첨부)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 1차 협의 : 8. 10(화) 10:30 - 15:00(정책복지위원실)
 - 참석 : 9명(의원 4명, 전문위원 2명, 집행기관 3명)
 - 2차 협의 : 8. 24(화) 10:30 - 11:00(정책복지위원실)
 - 참석 : 4명(의원 1명, 전문위원 1명, 집행기관 2명)
- ※ 조문내용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 토의

6. 입법예고 : 8. 16 - 9. 4(20일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양육수당”이라 함은 셋째 이상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다자녀 우대카드”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농협을 통하여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도민의 인식개선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과 양육 등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도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부모에게 축하금 내지 출산장려금 또는 축하품 지원
2.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 지원
3. 다자녀 가정 보육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부담) 지원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도가 100분의 40을 시·군이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다자녀 우대 카드발급) ① 도지사는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2. 각종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면제 또는 할인 혜택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 발급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출산장려의 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7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의 주간으로 한다.

제13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지원 정책 및 인구정책 지원 사업
2. 모자보건 증진사업
3.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이바지한 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바 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관련 전문가 등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 대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
2. 그밖에 도 출산·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

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보조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평가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전문개정 2007.10.17]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07.10.17]

□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